

2. PL법 시행 1년, 현주소를 파악한다.



한재원 부장
(현대해상화재보험
기업보험 5부)

I. PL법 시행 1년 현주소

제조물책임(PL)제도 시행 이후 중소기업들이 철저히 제품 관리를 하면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PL제도 시행 1년을 넘기면서 중소기업들의 PL 대응수준이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L제도 시행 이후 소비자들로부터 클레임이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기술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 스스로 교육, 홍보, 업종별 매뉴얼 개발 및 보급, 기술개발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PL제도가 시행될 때만 해도 중소기업들은 소송에 휘말릴 경우 회사 문을 닫는게 아니냐며 걱정했지만 지금까지 소송까지 간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품 결함에 따른 소비자 피해사고가 발생, 직접 배상하거나 보험처리하는 경우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상건수는 2001년 46건에서 2002년 93건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 2월까지 40건에 달했습니다.

지난 5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PL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PL 인지도가 9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74.5%에 비해 22.8% 포인트나 높아진 것입니다. 또 61.6%의 중소기업들이 PL 담당자를 두고 있으며 PL 담당부서를 운영하는 곳도 45.5%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PL사고 예방을 위해 PL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흡한 편이지만 PL보험 가입비율이 지난해 3월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6.2%를 기록했습니다.

PL보험은 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무역협회 등 4개 기관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가입실적을 보면 가입건수 3,025건, 가입금액 90억3,1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1999년 32건 9,500만원, 2000년 95건 5억800만원, 2001년 195건 11억1,400만원, 2002년 1,947건 50억700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올 들어서는 6월말 기준으로 756건 23억700만원을 가입, 금액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10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아직 PL제도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흡한 상태로 정부 당국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PL 담당자를 위한 교육지원 시스템도 갖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설치된 상담센터에는 소비자 문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제조업체들도 보험에 가입하고 외부 컨설팅까지 받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PL법 시행이후 피해자는 제조업체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만 피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던 과거의 호시절과는 달리 소비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한다면 제조업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은 이같은 숙제를 피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PL법이 2002년 7월 1일 이후 공급된 제조물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측면과 공급 이후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기까지 일정기간이 필요한 제조물이 상당수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시행 1년 경과만으로 PL법 시행의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고 봅니다.

향후 1~2년간은 PL법 도입의 과도기 시기로서 PL사고 예방 및 방어대책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특히 악의적인 소송(집단 소송제, 강제 리콜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발생할 경우 제조업체는 소비자 피해의 원인을 정확히 밝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II. PL법의 이해

PL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PL법은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여 제조업체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보다 나은 품질향상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된 민법 특별법입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1조).

제조물의 결함은 제조,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으로 구분되며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을 말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2조).

① 제조상의 결함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 가공상의 주의 의무의 이행여부에도 불구하고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하거나 가공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② 설계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③ 표시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다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 PL)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손해배상을 지게 하는 법리를 말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중전의 과실책임주의 하에서는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PL법은 제조물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PL법의 면책사유에는 제품 출하시의 과학기술의 수준에서 결함을 해결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제조물 책임에서는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이 있으며(개발위험의 항변 : State of Art), 또한 제조물이 유통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제조물의 결함상태를 감시할 수 있게 추적기능과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리콜을 강화시킨 조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4조).

III. PL법이 기업에 미치는 파장

PL법의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제조물의 안전성 강화와 소비자보호의 충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들 수 있습니다.



① 안전성 강화

리콜제도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제조물 책임제도는 사후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능을 합니다. 제조, 판매에 관여하는 자의 사후에 손해배상 책임 발생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제조물의 설계, 개발, 제조, 표시, 검사, 판매 등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활동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② 소비자 보호의 충실

PL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또는 제3자의 피해 발생시 제조업자 등의 고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결함의 존재여부에 따라 객관적 사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구제가 종전보다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가 보다 더 충실해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③ 기업의 경쟁력 강화

PL법에서는 민법과는 달리 결함의 존재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만을 책임요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분쟁해결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재판상은 물론 재판 외의 중재, 조정기구에서도 분쟁해결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PL법 도입으로 인해 제품안전대책 추진이 기업경영의 필수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안전한 제품생산과 판매경쟁으로 인해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게 되고, 기업 경쟁력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PL법의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는 제조원가 부담과 인력자원의 낭비, 신제품 개발의 지연, 기업 이미지 실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① 제조원가 상승

제품 안전성에 드는 비용과 PL보험 가입비용은 제조업체에 새로운 비용부담이 들기 때문에 제조원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최종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② 인력자원의 낭비

클레임 또는 소송사건이 법률적으로 복잡, 장기화되면 제조업체로서는 소송을 대비하기 위한 자료작성과 많은 인력을 투입하게 되어 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 있으며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법률비용도 지출하게 되어 기업 경영에 방해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신제품 개발 지연 및 기업 이미지 실추

제품 안전기준이 엄격해지고 제품 안전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강구됨에 따라 신제품 개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로 인식되어 기업의 부정적인 면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IV. PL법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PL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에는 사전 예방대책(PLP : Product Liability Prevention)과 사후 방어대책(PLD : Product Liability Defence)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사전 예방대책(PLP : Product Liability Prevention)

- ➔ 제품 개발단계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
- ➔ 제품 안전 시스템의 확립
- ➔ 제품 표시의 적정화(취급설명서, 경고 라벨)

② 사후 방어대책(PLD : Product Liability Defence)

- ➔ 클레임 처리체제의 확립
- ➔ 제품회수체제의 확립
- ➔ 소송대책, 보상대책
- ➔ 신뢰회복 조치 및 재발 방지대책
- ➔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업에는 결함이 없는 제품 만들기를 최우선으로 PL대책이 필요하며, 이에 많은 기



업에서 이의 실천을 위한 노력을 기해야 합니다. 높은 안전성을 위해 노력할 때 소비자의 신뢰를 얻게 됨은 물론, 기업에 대한 평가도 높아지게 되며, PL법에 정면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기업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V. PL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

생산물 배상책임보험(PL보험)은 생산물 또는 완성작업위험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Legal Liability)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구체적으로 PL보험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사고를 수반하지 않는 제조물의 결함 자체손해	×
2	제조물 결함 사고로 발생한 타인의 인명피해	○
3	제조물 결함 사고로 발생한 타인의 재산피해	○
4	다른 완성 제조물에 사용된 결함 제조물(원료, 부품)로 인한 완성품	○
5	사고를 수반하지 않는 결함 제조물로 인한 영업손실	×
6	결함 제조물만의 사고로 인한 영업손실	○
7	결함 제조물 사고로 타인의 재산이 입은 손해에 따르는 영업손실	○
8	결함 제조물로 생산한 제조물의 성능결함 또는 규격미달 손해	○
9	결함 제조물을 원자재로 하여 생산한 제조물의 품질결함	×
10	결함 제조물 사고로 인한 결함 제조물 자체 손해	×
11	결함 제조물의 회수, 대체, 수리, 검사비용	×
12	제조물의 공급지연 손해	×

PL보험료는 제조업체 생산제품, 매출액, 보상한도액, 공제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출합니다.

- ① 담보내용 : 보조사료 및 단미사료 제조, 판매
- ② 보상한도액 : A) 대인대물 1억원 B) 대인대물 5억원
- ③ 공제금액 : 1) 3백만원 2) 5백만원

A-1	2,510,000 (2,008,000)	3,320,000 (2,656,000)	5,430,000 (4,344,000)	6,500,000 (5,200,000)	7,679,000 (6,143,200)	8,299,000 (6,639,200)
A-2	2,385,000 (1,908,000)	3,160,000 (2,528,000)	5,160,000 (4,128,000)	6,200,000 (4,960,000)	7,280,000 (5,824,000)	7,900,000 (6,320,000)
B-1	4,450,000 (3,560,000)	5,890,000 (4,712,000)	9,600,000 (7,680,000)	11,550,000 (9,240,000)	13,599,000 (10,879,200)	14,700,000 (11,760,000)
B-2	4,230,000 (3,384,000)	5,600,000 (4,480,000)	9,120,000 (7,296,000)	11,000,000 (8,800,000)	12,881,000 (10,304,800)	14,000,000 (11,200,000)

* ()는 단체할인 20% 적용된 보험료 입니다.

2002년 10월 (사)한국단미사료협회와 현대해상화재보험은 보조사료 및 단미사료의 제조, 판매로 인한 대인, 대물배상을 담보하는 PL보험을 소속 회원사들을 위해 단체계약 협정식을 체결하여 단체할인 20%를 적용함으로써 개별로 계약하는 것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① G사 사료 사건(대법원판례 1977.1.25.75다2092)

▣ 사건개요

피고가 경영하는 사료공장에서 매입한 사료를 먹은 닭들이 심한 탈모현상과 난소위축 및 복강내 침출물 충만증의 심한 중독현상을 보이고, 산란율이 기존의 30% 이하 수준으로 저하되고 양계장의 경제성이 떨어져 모두 폐기처분하게 되어 사료판매회사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판시내용

사료에 어떠한 불순물이 들어 있는지 어떤 화학적·생리적 작용을 유발시켜 닭들에게 난소협착증을 일으켰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 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 틀림없이 제조과정에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사육하던 닭들이 위와 같은 현상을 초래하게 된 것이라는 인과관계는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조업자



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습니다.

② S사 사료 사건(대법원판례 1983.5.2482다390,82다카924)

▣ 사건개요

피고회사로부터 구입한 배합사료에 종전 방식대로 곡류, 어분 등을 배합해 배식한 원고의 닭들이 심한 중독현상을 일으켜 약 500수 정도가 죽어버린 사건으로 원고는 사료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판시내용

피고가 제조한 사료에 어떤 불량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것이 어떤 화학적·영양학적 작용을 일으켜 닭의 폐사를 가져온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은 사료를 급식시킴으로써 원고가 사육하던 닭들이 폐사하게 된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는 없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시했습니다.

PL법이 2002년 7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조물 분야에 대한 사후적 구제 제도라 볼 수 있으며,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사후적 구제방안보다 사전적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안전 확보에 대한 사전적 예방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업의 경우,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제품 안전에 관한 공적기준을 능가하는 자가안전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소비자에 대한 올바른 사용설명서의 제공과 오사용에 대비한 경고 부착 및 PL보험 가입 등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자사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기업은 신속하게 해당 제품을 리콜하여 소비자의 피해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불만 및 피해구제 상담창구도 설치,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㉟